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덕근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광업법」 개정(법률 제20439호, 2024. 9. 20. 공포, 2025. 3. 21. 시행)으로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(岩錐) 등 지질·광물 정보를 수집·보관·관리하고 이를 분석·가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‘국가광물정보센터’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그 업무를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 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2. 12. ~ 2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

법 제8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(이하 “한국광해광업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② 법 제86조의2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(岩錐) 등 지질·광물 정보의 보관·관리·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
2. 암추(岩錐) 등 지질·광물 정보의 수집·보관·관리
3. 암추 등으로부터 지질·광물 정보의 추출·분석, 국내 광물자원 및 지질에 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4. 지질·광물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
5. 지질·광물 정보 등의 이용·교육·홍보 및 정보 제공
6. 그 밖에 지질·광물 정보 활용을 통한 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

국가광물정보센터 운영계획서를 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내역

④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연도의 국가광물정보센터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업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일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광물정보센터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광업법과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한다.

② 제62조의2 제3항은 2026년도 운영계획서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2조의2(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)</u>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(이하 “한국광해광업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 ② 법 제86조의2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<u>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(岩錐) 등 지질·광물 정보의 보관·관리·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</u> 2. <u>암추(岩錐) 등 지질·광물 정보의 수집·보관·관리</u> 3. <u>암추 등으로부터 지질·광물 정보의 추출·분석, 국내 광물 자원 및 지질에 대한 전자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 4. <u>지질·광물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</u> 5. <u>지질·광물 정보 등의 이용.</u>

교육·홍보 및 정보 제공

6. 그 밖에 지질·광물 정보 활용을
통한 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하여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
고 인정하는 업무

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년 다음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
국가광물정보센터 운영계획서를
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산업통상
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
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
예산 내역

④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연도의
국가광물정보센터 운영결과를 다음
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
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
사항 외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
광업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5257